

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8. 19.

해 남 군



### ○ 도로명주소 부여

연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주소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붙 임 조 서						

※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종합민원과(☎530-5625, 5857)에 문의하거나 해남군청 홈페이지([www.haenam.go.kr](http://www.haenam.go.kr)),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등의 효력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
### ○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

- 이미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도로명변경신청서에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사용자의 5분의 1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건물의 주된 출입구가 변경되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건물번호변경신청서에 건물의 배치도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